<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2.08.25

# 피델리티 지속가능 컨슈머 브랜드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D9998 ]

|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피델리티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100%까지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외국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및 **재간접투자 위험,** 신흥시장의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정성**에 따른 **신흥시장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피델리티 지속가능 컨슈머 브랜드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인 피델리티 지속가능 컨슈머 브랜드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 - 지속가능컨슈머브랜드펀드 (Fidelity Funds - Sustainable Consumer Brands Fund)에 주로 투자하며,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이머징마켓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에 소재하며 소비자 브랜드 테마와 연계된 기업들(즉, 지식재산, 가격결정력 및 뛰어난 성장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포함한 전세계 기업들의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br>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

투자비용

(2022년 6월말 기준)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 |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연, %) | 판매보수 (연, %) | 동종유형 총보수 (연, %) | 총 보수•비용 (연, %) | 1 년 | 2 년 | 3 년 | 5 년 | 10 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 납입금액의 1.0%이내 | 0.8620 | 0.7000 | 1.0100 | 1.9910 | 301 | 513 | 736 | 1,215 | 2,64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 없음 | 1.3620 | 1.2000 | 1.3200 | 2.4895 | 255 | 513 | 758 | 1,259 | 2,749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 납입금액의 0.5%이내 | 0.5120 | 0.3500 | 0.6500 | 1.6412 | 217 | 393 | 577 | 975 | 2,15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 없음 | 0.6620 | 0.5000 | 0.8600 | 1.7921 | 184 | 377 | 579 | 1,015 | 2,31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 | 없음 | 0.6820 | 0.5200 | - | 1.8129 | 186 | 381 | 586 | 1,027 | 2,337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2021 년 9 월 3 일자로 연 0.022%로 변경되며, 2021 년 9 월 2 일까지는 연 0.025%가 적용됩니다. 상기 표는 변경 후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 A 형과 종류 C1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한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4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5) '총 보수• 비용'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를 포함하며,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의미합니다.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1.10%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주 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 년<br>2021/07/01 ~ 2022/06/30 | 최근 2 년<br>2020/07/01 ~ 2022/06/30 | 최근 3 년<br>2019/07/01 ~ 2022/06/30 | 최근 5 년<br>2017/07/01 ~ 2022/06/30 | 설정일이후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 2020-10-20 | -26.29 | | | | -8.76 |
| 참조지수 | 2020-10-20 | -17.02 | | | | -2.55 |
| 수익률 변동성 | 2020-10-20 | 21.58 | | | | 18.48 |

1) 참조지수: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Net) *95% + Call 5%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평균하였으며, 상기 기준일 현재 설정된 종류(클래스) 중 일부 종류(클래스)의 수익률을 대표로 기재하였습니다.
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집합투자기구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운용전문 인력**

(2022년 6월말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재간접형-해외투자(60 형))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개) | 운용규모 (억원)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
| 안종현 | 1970 | 본부장 | 30 | 54,207 | -13.29 | 11.09 | -13.29 | 11.09 | 2 년 5 개월 |

(주 1)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 2)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 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table>
<tr><td>투자자<br>유의사항</td><td>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br>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r>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주요<br>투자위험</td><td>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투자원금손실 위험</td><td>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td></tr>
<tr><td>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td><td>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td></tr>
<tr><td>환율변동 위험</td><td>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100%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table>
<tr><th>구분</th><th>환위험 관리 전략 세부내용</th></tr>
<tr><td>환헤지여부</td><td>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 내 투자자산 중 매매가 자유로운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위험을 소극적(passive)으로 헤지하고 있습니다.</td></tr>
<tr><td>환헤지 방법</td><td>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주로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며, 시장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여타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td></tr>
<tr><td>목표 환헤지비율</td><td>모투자신탁의 목표 환헤지비율은 외화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100% 수준이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td></tr>
<tr><td>환헤지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td><td>호가중심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환거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거래 당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환율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있는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의 어떠한 거래 비용도 가격(환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td></tr>
</table>
</td></tr>
</table>
</td></tr>
</table>

| | |
|---|---|
| |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br><br>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
| 분산투자관련 위험 |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br>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가위험 |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대상 국가의 증권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국가 또는 설립 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 특정 업종(섹터) 집중투자 위험 | 특정 업종(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업종(섹터)의 경기 민감도에 따라 투자신탁의 성과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신흥시장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 파생상품투자 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재간접투자위험 |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 가격조정정책 관련 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투자자의 거래 금액 및 유형에 따라 기준가가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 모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 감독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달리 투자했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 해지위험 |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 | | |
|---|---|---|---|
| 매입 방법 |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br><br>**오후 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환매 방법 | **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8 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br><br>**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9 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 환매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구[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br>-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fidelity.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과세**

| 구 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투자자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절차 및 방법**

**동일 투자신탁내 전환:**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최초로 매입하는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에 한합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전환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 해당사항 없음.

| | | | |
|---|---|---|---|
| **집합투자업자** |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번호: 02-3783-0901) / 인터넷 홈페이지 : www.fidelity.co.kr<br>(환헤지 관련 업무 위탁운용사: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60 조 좌 |
| **효력발생일** | 2022 년 09 월 01 일 | **존속 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5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u>'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u>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r><br>단, 이 집합투자기구는 보수체감(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며, 위 시점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br><br>*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 약 2 년 11 개월 |
| | 수수료 후취 |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r><br>단, 이 집합투자기구는 보수체감(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

| | | |
|---|---|---|
| | | 적용하며, 위 시점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br><br>*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 약 2 년 11 개월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보수체감 (C1~C4)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무권유 저비용(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 (W) | 판매회사의 일임형 계좌, 특정금전신탁, 법 제 105 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 (C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개인연금 (PRS)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 (I) | 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기관 (F) | 기관투자자, 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계열사 자금(N) |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각 종류(클래스)별 세부 가입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